

# 보 도 자 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021. 4. 29.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었다.
- 제청법원은 2019. 1. 2. 양벌규정인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결정주문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4 결정 이래로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 위배를 이유로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 11. 25. 2010헌가8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현행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제81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